

< 제3안 >

수신 수신처장조

제목 도시계획사업(도로)실시계획 변경인가 통보

1. 증건토일 30500-2129('92.10.2)호와 관련임.

2. 도시계획사업(도로) "행당천 재방도로공사"의 실시계획 변경인가를 도시계획법 25조및 제26조와 동법시행령 제6조및 제27조의 규정에의거 별첨 고시문과같이 변경인가 및 고시하였기 통보 하니 업무에 참고바람.

첨부 : 고시문1부 끝.

서울특별시

수신처 : 종합건설본부장, 도로계획과장, 성동구청장(건설관리과장)

< 제4안 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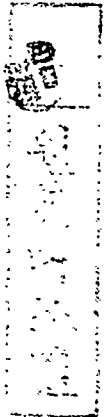
수신 홍보계획담당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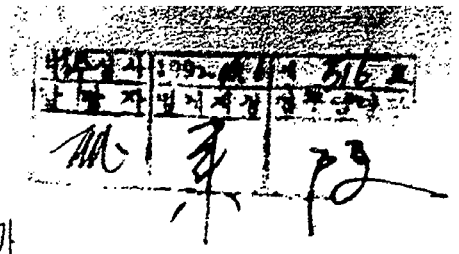
제목 시보게재의뢰

도시계획사업(도로) 실시계획 변경인가한 "행당천 재방도로공사"의 고시문(서울시 고시 제1992- 호)을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첨부 : 고시문사본2부 끝

건설행정과





도시계획사업 (도로) 실시계획 변경인가

1. 서울시고시 제1991-352호('91.12.6)로 도시계획사업(도로) 실시계획인가한 "행당전 제방도로공사"을 도시계획법 제25조 및 동법시행령 제6조 규정의거 실시계획 변경인가 하였기 동법 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과 같이 고시합니다.
2. 관계도서는 서울시 종합건설본부 (토목1부 TEL 313-6304) 에 비치하고 토지등 소유자와 이해 관계인에게 보입니다.

1992. 10 .

서울특별시시장

가. 사업시행지 : 변경 없음

나. 사업의 종류 및 명칭

- 종류 : 도시계획사업(도로)
- 명칭 : 행당전 제방도로공사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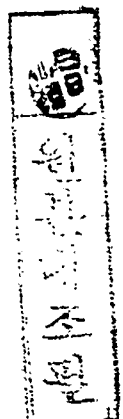
다. 사업시행자 : 서울특별시시장(종합건설본부장)

라. 사업규모 : 변경 없음

마. 사업의 과수 및 준공예정일 : 당초 '91.12.6 ~ '92. 7. 5
 변경 '91.12.6 ~ '92.12.31

바. 사업또는 수공할 토지 및 지장물의 소재지, 지번, 지목, 지적, 소유권이외의 권리
 명세서 : 별첨

사. 토지 및 건물 등의 소유자와 토지수용법제4조 제3항에 의한 관계인의 주소성명
 : 별첨



서울특별시종합건설본부

우 120-030 서울서대문합동27-1 / 전화 (02) 313 - 6304

전송 362-4289

문서번호 종결토일 30500-212A

시행일자 1992.10.11.

수신 서울특별시장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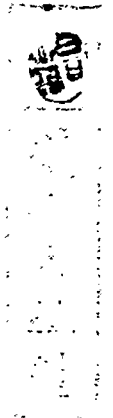
참조 건설행정과장

신결	과장	<i>mm</i>	지	
접	일자 시간	1992.10.11.2	시	
수	번호	5768	결	계장 <i>hjs</i>
	처리과		재	
	담당자		공	
			관	

제목 도시계획사업 (도로) 실시계획 변경 인가 요청

1. 건행 30500 4193 (91.12.5) 호와 관련입니다
2. 위 대호에 의거 서울시 고시 제 1991-352호 (91.12.5) 로 도시계획사업 (도로) 실시계획 인가 통보된 행당천 개방도로 공사가 지장물 철거 처리 지연으로 공사 기간 연장 되었으나,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 인가 변경이 조치되지 않아 행정적 불변경인가 요청하오니 동사업 효력회복 및 인가기간 연장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첨부 : 1. 변경인가 신청서 1부
2. 공사기간 연기 보고서 1부. 끝.



서울특별시종합건설본부



도시계획사업(도로)실시계획인가 변경신청서

=====

1. 사업시행자 : 성동구 용봉동 10-334 성동구 행당동 80번지간

2. 사업의 종류 및 명칭
 - 종류 : 도시계획사업 (도로)
 - 명칭 : 행당천 재방도로공사

3. 사업시행자 : 서울특별시

4. 공사 개요
 - R = 4 - 20M , L = 430M

5.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
 - 당초 : 1991. 12. 5 ~ 1992. 7. 4
 - 변경 : 1991. 12. 5 ~ 1992. 12. 31

6. 자원조사 : 변경 없음.

7. 위치도 및 공사평면도 : 변경 없음.

8. 공사실계도서 : 변경 없음

9. 수용토지 조서, 지목, 소유권 및 소유자와 토지수용법 제4조 3항의 규정에 의한
관계인 주소 성명 : 변경물건주거조서(영업권, 이전비) 1부.



○ 사업내용

- 목 조 : 서울시 지역중 유일하게 차량이 주차되어 있지 않아 인근사립고
상업 점수되어 주차발생 되는 지역인 성동구 행당, 행당동 일대의
향후적 주차방지를 위한 주차대비 사업임.

- 위 지 : 성동구 행당동 10-334- 행당동 80번지간

- 차 양 면 : 영민선 차량 프로그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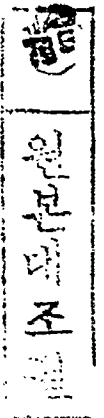
- 공사개요 : B = 4~ 20M, L= 430M

- 시 공 자 : 서울특별시

- 변경신청 사유 :

· 당초 인가시 보상 물건조사상 주우소 1개소의 명법권, 이전비 등 고가
부형되어 인가조치후 명정 절차에 의거 절거 집행하여 공가내 공사완료
되자 함.

첨본 : 도시계획인가 변경신청서 2부, 붙.



환경물건조사서첨부 (영양권, 이질비) 1부

<p>성동구 행당동 67-5</p>	<p>주유소 (상호: 동천유업)</p>	<p>콘크리트구체 54x64x34 유류탱크 20,000L</p>	<p>1개소 6대</p>		<p>권성순</p>	<p>장남구청당동 76-4 추안외관 303호</p>				<p>비고</p>
------------------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-	-------------------	--	------------	--	--	--	--	-----------

1992. 5. 28
 종합건설본부장
 No. 189

수신 종합건설본부장
 발신 본부1부장
 제목 준공기한 연기 (공정계획 변경)

담당자	2담당	보좌1부장	차장	본부장	계좌일자
김	김	김	김	김	✓

김영희 김광환 김

1. 동부도시고속도로 건설공사 (제 3공구)의 준공기한을 다음과 같이 연기함에 따라 공정계획을 변경코자 합니다.

가. 현행 (중괄)

- 개 고 : B- 15M × 2열, L-4,100 M
- 토 공 비 : 10,018 억원
- 토 공 직 : () 인명
- 공사기간 : 89.11. 10 92.10.13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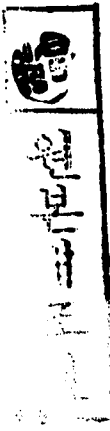
나. 연기대상 공구

구 사 명	착 공 일	준공 예정일		계약금액	공진(%)	비 고
		당 초	변 경			
3공구 3차	90.11.16	92. 5. 31	92.10. 4	4,278,890	80	
3공구 4차	91. 5. 3	92. 7. 31	92.10.10	537,570	42	

다. 연기사유

- 3공구 3차
 - 상수도 이설공사 시정지연 (92. 5. 2, 이설공사 완료)
 - ※ 상수도관로 ϕ 1650 MM, L= 380 M
 - 급수관 연락공사 9개소, 신설 제수변 3개소
 - 대상물량 : 본선도로 (380M), 녹지대및 노상성토, 호안블럭, U,L형측구, 플룸관.

지연일수 : 154일 (91.12. 1-92. 5. 2)



· 재방축조공사 지장물 철거지연 (현재 골재적치장 입
막완료 되었으나, 공사추진 가능)

※ 건물 13동, 모래, 자갈적치 20,000㎡, 태크스장 854평

대상물량 [재방축조 B-4 40M, H 9M, L 430M
저수로굴착 73,300㎥

시공일수 : 61일 (92. 3.20 ~ 92. 5.20)

○ 3공구 4차

· 3차공사 관여대상 물량 공구후 3공구에서 할 주요 공사로 자동연인

대상물량 : 산택층, 보조리층, 중층, 표층, 노면, 가드레일

시공일수 : 122일 (92. 3.1 ~ 92. 6.30)

2. 직책상임 부과일수 : 21부과

3. 연공일유 관여일수 : 10월시 종합건설일수

4. 공사연기 기간

· 3공구 3차 : 92. 10. 4(92. 5. 2 ~ 92. 10. 4) : 154일)

· 3공구 4차 : 92. 10. 10(92. 6. 30 ~ 92. 10. 10) : 122일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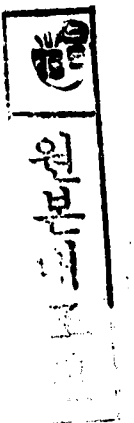
공구 : 1. 임의도면 1부

· 관여공사 예정일도면 (착수공사) 2부

· 전체공사 (3공구) 연공 일정계획표 1부. 끝.

1992. 5.

보고자 : 지방토목기사 과 변



Handwritten signature or mark.

수신 : 종합건설본부장

장소 : 본청 1부장

제목 : 준공기한 연기

담당자	소명장	보좌관	차장	본청장	부장
	홍	김	김	김	김

1. 동부도사고속도로건설공사(제3공구)의 준공기한을 다음과 같이 연기코자 하오며, 이에 따라 시공감리용역도 추가 연장시행코자 합니다.

가. 현황(종급)

- 개요 : B = 15M × 2열 L = 2,400M
- B = 18.5M × 2열 L = 1,700M
- 도급비 : 10,018 백만원
- 도급자 : (주)한양
- 공사기간 : '89. 11. 10 ~ '92. 10. 13

나. 연기대상공사

공사명	착공일	준공예정일		계약금액	공정(%)	비고
		당초	변경			
3공구 3차	90.11.16	92.10.4	92.11.29	4,054,930천원	95 %	
3공구 6차	92. 4. 8	92.10.13	92.11.30	1,425,721천원	82 %	

다. 연기사유

○ 3공구 3차

· 제방부조공사 일부구간 지장을절거 지연

· 지장물 : 주유소 1개소, 건물 1동, 굴재적차 500m²

· 전역현황 : 제방부조(B = 4~40M, L = 430M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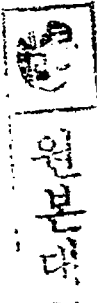
상토 70,000m²중 30,000m² 호안공 1,500m²

· 전역현황 시행 분대공기 : 92일('92.5.15 8.14) × 30,000/70,000
= 39.4일 → 40일

· 강제절거계획(성동구청) : '91.10월 시행 수립중

※ '92. 10. 20 전후 시행예상

· 연기일 : '92. 10. 21 부터 40일간 → '92. 11. 29



3공구 6차

- 본공사 공기선정시 감안되지 않은 무기(직업불가)일수 가산(30일)과
- 수방기간중 하천내(저수로) 교량하부공사 시행부진에 따른 작업부진일(11일) 반영 원기조치
- 잔여물량 : 교량 Slab 1경간(60M), 아스콘포장 30a

라. 시공감리 연장 (제 3공구)

- 인원 구성 : 고급기술자 1인, 초급기술자 1인
- 감리기간 연장 : 48일

당초 92.10.13 → 변경 92.11.30

2. 지체상금 부과여부 : 미부과

3. 연기사유 귀책소재 : 서울시 종합건설본부

4. 공사연기 기한

- 3공구 3차 : '92. 10. 4 → '92. 11. 29
- 3공구 6차 : '92. 10. 13 → '92. 11. 30

정부 : 위치도면 1부

3차, 6차 예정승정표 각 1부. 끝.

1992. 9.

